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1. 의결주문

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○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전세 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 거나 본인의 임차권보호를 위하여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에 따른 임차권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면제하여 전세사 기피해자를 지원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○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관하여 일정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 면제 및 구체적인 면제 대상 등에 관하여 정함(안 제7조의3 신설)

4.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붙임과 같음

5. 신・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7조의3(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등기신청수수료 면제)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(이하 이 조에서 "전세사기피해자"라고 한다)에 관한 같은 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(이하 이 조에서 "전세사기피해주택"이라고 한다)을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등기에는 제5조의2 또는 제5조의5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.
 - 1. 전세사기피해자가 본인의 임차권보호를 위하여 신청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가압류결정 및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등기
 - 2. 전세사기피해자가 취득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 기. 이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등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 공하여야 한다.
 - 3. 전세사기피해자가 취득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「민사집행법」 제144조제1항에 따른 등기 및 「부동산등기법」 제97조에 따른 등기
 - 4. 전세사기피해자가 본인의 임차권 보호를 위하여 신청한 전세사기피

해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유효기간) 제7조의3은 공포한 날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- 제3조(적용례) 제7조의3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.
- 제4조(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) 제7조의3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사람과 「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 제12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규칙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규칙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7조의3(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등기신청수수료 면제)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(이하 이 조에서 "전세사기피해자"라고 한다)에 관한 같은 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(이하 이 조에서 "전세사기피해주택"이라고 한다)을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등기에는 제5조의2 또는 제5조의5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. 1. 전세사기피해자가 본인의 임차권보호를 위하여 신청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가압류결정 및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등기 2. 전세사기피해자가 취득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, 이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등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

<u>다.</u>

- 3. 전세사기피해자가 취득한 전

 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「민

 사집행법」 제144조제1항에

 따른 등기 및 「부동산등기법」 제97조에 따른 등기
- 4. 전세사기피해자가 본인의 임 차권 보호를 위하여 신청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임 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

<의안 소관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	
연락처	(02) 3480-1396